



헝가리 공정거래법의 특징과 내용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 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 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 하는 것이다.

1. 경쟁법제의 개요

가. 근거법 및 그 변천

현행 헝가리의 경쟁법은 1996년부터 시행하여

은 「불공정 및 제한적인 시장관행의 금지에 관한 1996년 법 제62호(이하 헝가리 경쟁법 : Act No. 62 of 1996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and Restrictive Market practices)」이다. 헝가리에서 최초로 경쟁법을 도입한 것은 아주 오

래 전인 1923년의 일이지만, 당시의 법률에는 카르텔 금지규정이 없었고, 또한 법 집행도 주로 민사소송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라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헝가리에서 카르텔이 최초로 금지된 것은 1931년의 일이며 이때 카르텔 금지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은 국가의 산업장관에게 주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는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 후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지배적지위의 남용 등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아직 합병규제에 관계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병규제가 도입된 것은 1990년에 와서이다. 이때에 경쟁정책의 일원적인 집행기관으로 “經濟競爭廳”(The office of Economic Competition)이 설치되었다. 다시 그 후에 EU 경쟁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개정을 거쳐 현행의 헝가리 경쟁법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나. 집행기관

경쟁법의 집행기관인 경제경쟁청의 장관 및 2명의 부장관은 수상의 지명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6년이다(제35조제2항). 의회와의 관계를 보면 장관으로 지명을 받는 자는 수상의 지명에 앞서 의회의 공청회에 출석하고(제35조제3항), 매년 의회에 년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제36조제2항c).

경제경쟁청에 의한 위반사건의 처리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쟁평의회(The Competition

Council)가 있는데, 경쟁평의회는 조직상 경제경쟁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 경쟁평의회 의장은 경제경쟁청의 부장관 가운데 1명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제35조제2항). 기타 위원(member)은 경제경쟁청 장관의 지명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8조제1항). 그 임기는 무기한이며 1997년 3월 현재로 경쟁평의회 의원은 7명(법률가 5명 및 경제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규제되는 내용

헝가리 경쟁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크게 구분하여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금지행위 중에는 독점금지법이나 경품표시법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불공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1) 불공정한 경쟁의 금지(Prohibition of unfair competition)

이 유형에 속한 행위(제5조)는 다음과 같다.

- (1) 불공정한 경쟁의 금지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금지의 선언(제2조)
- (2) 허위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위장하는 등으로 경쟁사업자의 명성이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제3조)
- (3)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상의 비밀을 획득하거나 사용하고 또는 불법으로 이를 공개하는 행위(제4조제1항)
- (4) 타사업자의 기존의 경제관계를 파괴하고 또는 그 구축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공

정한 신고를 하는 행위(제5조)

- (5) 표지, 포장 혹은 표시 또는 명칭, 상표 혹은 디자인(design)의 사용에 의하여 상품이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상품과 관계되는 경쟁사업자의 승인없이 그 상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제6조)
- (6)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가를 불문하고 입찰, 경매 또는 증권거래의 공정함을 손상케하는 행위(제7조)

2) 소비자 선택의 부정한 조작의 금지(Prohibition of unfair manipulation of consumer choice)

헝가리 경쟁법에서 「소비자」는 「고객, 구입자 또는 사용자(user)」를 의미하는 것으로(제8조 제1항 후단), 일반 최종소비자라는 의미의 「소비자」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경제적 경쟁 중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제8조제1항 전단)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제2항).

- ① 가격, 성분, 용도, 건강 또는 환경에의 영향, 원산지 등 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오해를 주는 방법으로 주장하는 행위
- ② 상품의 법적 사양(仕様), 국가가 정한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없도록 숨긴다든지 또는 상품의 사용에 있어 통상적으로 현저히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을 비밀로 숨기는 행위
- ③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판매 또는 유통에 관하여, 특히 유통의 방법이나

지불기간, 상품에 관련한 경품, 가격의 인하 등에 관하여 기만적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④ 특별히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허위의 인상을 주는 행위

3) 경제적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의 금지(Prohibition of agreements restricting economic competition)

여기에서는 사업자간의 협정 혹은 협조적 관행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결정에 따라 그 목적 또는 그 잠재적 혹은 현실적 효과를 위하여 경쟁을 방해, 제한하고 또는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11조제1항).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 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문하고 구입 혹은 판매에 관계된 가격 또는 기타의 가격조건을 결정하는 행위(제11조제2항a)
- ② 생산, 유통, 기술개발 또는 투자를 제한 또는 규제하는 행위(제11조제2항b)
- ③ 공급선 선택의 제한이나 특정범위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의 제한과 기공급선을 제한하는 행위(제11조제2항c)
- ④ 시장분할(제11조제2항d)
- ⑤ 입찰담합(제11조제2항e)
- ⑥ 시장침입의 방해(제11조제2항f)
- ⑦ 차별적 취급(제11조제2항g)

이러한 행위유형은 원칙적으로 금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예외적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다(제12조).

- ① 중요성이 낮을 때

② 상호 독립적이지 못한 사업자간에 체결된 때 여기에서 「중요성이 낮을 때」라 함은 협정 등에의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제13조).

4) 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Prohibition of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며, 일정한 행위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금지된다(제21조, 제22조).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시장에의 진입·퇴출관련 비용, 당해사업자의 자산, 자금조달력 및 이익률, 이익추세, 관련시장의 구조, 시장점유율, 시장참가자의 행동요소를 감안하여 인정하게 되며(제22조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① 어떤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과 합리적으로 보아서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도 구입하지 못하며, 또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으로밖에 구입치 못하는 상황에 있는 당해사업자(제22조제1항a)
- ② 어떤 사업자가 구입하는 제품에 관하여 그 사업자 이외는 구입자가 없고 또한 판매자가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밖에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당해사업자(제22조제1항b)
- ③ 자기가 공급하는 시장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자 경쟁업자, 고객 및 타사업자의 반응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사업 활동의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제22조제1항c)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금지되는 행위는 10개 행위가 있으며(제21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①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한 구입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불문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고 혹은 타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행위(제21조a)
- ② 생산, 유통 또는 기술개발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제21조b)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관계의 구축 또는 유지를 거부하는 행위(제21조c)
- ④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사업자의 사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제21조d)
- ⑤ 타제품의 공급 또는 구입을 조건으로 하여 어떤 제품을 공급 또는 구입케 하고 더욱이 계약체결시에 당해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제21조f)
- ⑥ 효율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에의 침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극히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제21조h)
- ⑦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장에의 침입을 방해하는 행위(제21조i)

5) 기업결합규제(Control of concentration of undertaking)

기업결합(합병, 영업양수, 50%를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 등)에 관해서는 관련기업의 전년도 합계매상고가 100억 헝가리 후리트(약 57,438천 \$ (1997년 9월 현재. 이하 같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제경쟁청의 허가(authorization)가 필요하다(제24조). 관련사업자는 경제경쟁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28조).

신청에 대한 경제경쟁청의 심사에서는 관련시장의 구조, 잠재적 경쟁자의 유무, 시장에서의 침입·퇴출을 위한 비용이나 기술적·경제적·법적 제조건, 시장에서의 지위·전략, 국내외에 있어서 경쟁력, 공급자에 대한 영향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제30조제1항).

경제경쟁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거절하면 안 된다(제30조제2항).

- ① 당해 결합이 지배적 지위의 창출 또는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 ② 관련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의 형성, 발전 또는 유지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 ③ 결합으로 가져오는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하는 경우

라. 절차

사건처리절차는 대별하여 심사관(investigator)에 의한 절차, 경쟁평의회에 의한 절차, 추가심사(post-investigation) 및 집행으로 나누어진다(제47조제2항). 다만 경쟁평의회에 의한 절차는 개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사건담당 위원이 지정되고 경쟁회의(competition board)를 구성 심의하게 된다.

심사관에 의한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도, 직권

에 의해서 심사가 개시된다(제67조제1항). 심사관 및 경쟁회의는 입회검사, 문서제출 등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게 된다(제65조제1항). 심사관은 심사 개시 후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인정된 사실과 그 증거, 당해안건의 처리에 관한 제안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경쟁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1조제1항, 제2항).

경쟁회의는 심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공개심리(Trial)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제72조제1항 및 제74조). 경쟁회의는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위반상태의 배제를 명하여 위반행위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하고(제77조제1항), 이외에 제재금(Fine)을 납부하도록 명한다. 경쟁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수도권법원(Metropolitan Court)에 제소할 수 있다(제82조).

2. 최근의 법운동

가. 사건처리 건수

1991년도에서 1995년도까지의 위반행위유형별의 결정건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1991년에서 1995년까지의 위반행위유형별 결정건수의 추이◆

위반행위유형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불공정한 경쟁	11	24	35	23	23
소비자선택의 부정조작	6	24	29	50	56
경쟁제한 협정	5	3	3	1	5
지배적 지위의 남용	28	32	26	28	44
기업결합 규제	5	8	3	3	24
합 계	55	91	96	105	152

나. 주요한 사례의 소개

1) 치약광고에 관한 사례

치약광고에 관해서는 세 건의 사례가 있다. 그 가운데 두 건은 Colgate Palmolive Hungary : CP)가 P&G헝가리에 의한 불소내용물 및 「의약 성분배합」치약의 사용법에 관한 광고가 문제가 된 경우이다. 다른 한 건은 P&G가 CP에 의한 칼슘 첨가치약에 관한 광고캠페인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이다. 어느 사례에 대하여서도 경쟁평의회는 광고주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된 표현을 한 제품의 우수성에 관한 그릇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여 CP와 P&G 각각에 대해 3000만후리트(약 17만2천 \$)의 제재금의 지불을 명했다.

2) 커피 Cartel에 관한 사례

Douwe Egberts Compack, Nestle Hungaria 등의 커피유통업자 5개 사는 헝가리의 커피시장에서 합계 97%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들 업자들에 의하여 행한 가격협정에 따라 1994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커피제품의 가격이 세 배로 인상되었다. 경쟁평의회는 이 5개 사에 대하여 합계 3억8,800만후리트(약 2,228천만 \$)의 제재금의 지불을 명령하였다.

3) 고지(古紙) 회수분야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

고지회수분야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Ereco East-European Waste proceeding And Environment Protecting 사가 고지구입자인 거래선과의 계약변경에 임하여 동사 배송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미리 공제하도록 거래선에 요구한 것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쟁평의회는 동시에 200만후리트(약 115만 \$)의 제재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4) 맥주유통업자간의 기업결합 심사

Kobanya Brewery에 의해 헝가리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맥주는 33사의 유통업자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33사의 유통업자 가운데 90% 이상은 Kobanya Brewery의 소유이며, 이 유통업자간의 합병으로 중요한 경영방침은 Kobanya Brewery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유통업자간의 합병의 주요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유통업체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평의회는 유통업자 간의 합병을 승인하였다.■